

레이와 (令和) 2년 5월 12일

출입국 재류 관리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재류카드 관계의 제출 또는 신청에 접수기간 연장에 대해서

재류카드 관계의 제출 또는 신청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제반 정세를 감안하여 지방 출

입국 재류 관리관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기와같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재류카드에 관계되는 법정의 제출 또는 신청기간의 끝자리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 가 3 월 4 월 5 월 6 월 또는 7 월중인 분은 그 말일로부터 3 개월 후까지 제출 및 신청을 거행함에 지장이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제출 및 신청>

- 재류카드 씨명등의 기재사항 변경제출 (입관법 제 19 조의 10 제 1 항)
-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 (입관법 제 19 조의 11 제 1 항)
- 재류카드 분실등에 의한 재교부신청 (입관법 제 19 조의 12 제 1 항)

감염확대 방지 관점에서 급한 용무가 없으신 분은 청사에 오시는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

